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	

제안연월일 : 2025. 11. 27.
제 안 자 : 정무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	심사경과
2206219	권칠승의원	2024.12.5.	제422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정무위원회(2025.2.1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
2208740	김한규의원	2025.3.10.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(2025.8.26.)
2214322	이양수의원	2025.11.17.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(2025.11.24.)

가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(2025.11.25.)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11차 정무위원회(2025.11.27.)는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(보훈병원 포함)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(이하 “위탁병원”이라 함)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, 광주, 대구, 대전, 부산,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,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,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.

이에,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”을 추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

법률 제 호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국가의 의료기관(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”을 “국가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단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”를 “제2항의 의료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”를 “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”를 “의료기관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”을 “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의료지원) ① (생 략)	제17조(의료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독립유공자가 질병(부상을 포함한다)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(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.	② ----------국가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"공공단체의료기관"이라 한다)----------.
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제2항의 의료기관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	⑤ ----------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----------

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.	---. ----------의료기관에----------.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	⑥ ----------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----------. ----------.
⑦ · ⑧ (생 략)	⑦ · ⑧ (현행과 같음)